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가합53025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 정형화, 강경덕

可 고 대한민국

변 론 종결 2019. 11. 29.

판결 선고 2020.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87,247,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스웨덴 소재 B(B, 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각종 의류를 수입하는 회사로서 2015. 11. 30. 피고의 관세 부과기관인 서울세관장으로부터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7. 5.부터 2014. 8. 16.까지 B으로부터 신고번호 C 등 46회에 걸쳐청바지, 자켓 등의 의류 및 잡화(이하 '이 사건 수입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면서 위수출업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서울세관장은 2015. 1. 12. 원고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고 한다) 제13조에 따라 이 사건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하고, 2015. 3. 12.부터 2015. 9. 23.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세관장은 위 원산지 서면조사 과정에서 스웨덴 관세당국에 이 사건 수입품에 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스웨덴 관세당국은 2015. 7. 1. 이 사건 수입품의 수입 당시 교부된 134건의 송품장 기재 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특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장은 2015. 8. 11. 원고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한 뒤 2015. 9.23. 원고에게 위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며 30일의 이의제기기간을 부여하고, 2015. 10. 27. 과세전통지를 거쳐 2015. 11. 30. 이 사건 수입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족 관세 386,149,410원, 관세가산세 86,326,590원, 부가가치세가산세 14,871,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관세와 가산세를 각 '이 사건 관세',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구체적인 부과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2. 11.부터 2016. 11. 15.까지 위 관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가. 이 사건 관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 사건 수입품에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9] 제62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수입품은 대부분 유럽연합의 역외에서 생산된 직물을 역내에서 자수 또는 도포 공정을 거쳐 가공한 것으로서 직물의 가격이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협정관세 적용대상이다. 그런데도 피고 산하 서울세관장은 이 사건 수입품의 제조공정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수입품의 직물이 유럽연합의 역외에서 생산되었음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이 사건 가산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입품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원고에게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은 피고에게 제출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관세에 관하여

1)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 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갑 8,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수입품이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9] 제62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이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스웨덴 관세당국에 이 사건 수입품의 원산지 조사를 의뢰하고, 스웨덴 관세당국이 이 사건 수입품에 관한 134건의 송품장을 심사한 뒤 이 사건 수입품에 협정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입품에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수입품이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9] 제62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수입품의 제조공정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품이 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관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가산세에 관하여

1) 갑 3 내지 7호증, 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B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 중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이 사건 의정서'라고 한다)'에 따른 인증수출자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수입품을 수입하면서 B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대부분의 경우 이 사건 의정서에 서 정한 원산지 신고 문안1)이 기재된 송품장을 교부받은 점, ③ 이 사건 수입품에 부착된 라벨에는 'Made in Italy'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관세법인을 선임하는 등 이 사건 수입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조사하고, 직접 이탈리아소재 공장을 방문하여 가공 과정을 확인한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수입품에 협정관세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을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수입품에 관한 관세 신고를 하며 협정관세를 적용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① 관세법 제42조 제1항은 본문에서 과소신고된 관세액을 징수할 때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 위와 같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는 그 개념이 불확정적이어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수입품을 수입할 당시 교부받은 송품장 중 일부에는 원산지신고 문안이 누락되어 있다.

③ 서울세관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질문서를 송부하여 '검증대상물품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따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서울세관장은 위 질문서로 이 사건 수입품에 협정관세가 적용됨을 증빙하는 서류를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송품장, 패킹리스트, 선하증권만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수입품의 제조공정을 설명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④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이탈리아 공장을 방문하였다는 점을 소명할만한 자료가 서울세관장에게 제출되지 않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상범, 판사 박현이, 판사 김재승

경정고지 상세내역

신고번호	날부(고지)번호	고지일자	날부기한	관세	부가세	관세가상세	부가세가상세	총합계
		2015-11-30	2015-12-15	144,080	14,400	44,530	8,990	211,400
		2015-11-30	2015-12-15	10,270	1,020	3,120	580	14,940
		2015-11-30	2015-12-15	40,490	4,050	11,890	2,310	58,640
		2015-11-30	2015-12-15	27,330	2,730	7,990	1,480	39,530
		2015-11-30	2015-12-15	188,810	18,880	54,020	9,990	271,700
		2015-11-30	2015-12-15	558,070	55,810	159,610	29,530	803,020
		2015-11-30	2015-12-15	38,730	3,870	11,030	2,090	55,640
		2015-11-30	2015-12-15	15,660	1,570	4,470	820	22,520
		2015-11-30	2015-12-15	3,291,070	329,110	940,620	174,000	4,734,800
		2015-11-30	2015-12-15	78,670	7,860	22,090	4,060	112,670
		2015-11-30	2015-12-15	270,310	27,030	75,450	13,670	386,460
		2015-11-30	2015-12-15	385,460	38,550	107,190	19,690	550,890
		2015-11-30	2015-12-15	337,550	33,750	93,290	17,110	483,700
		2015-11-30	2015-12-15	732,650	73,260	197,260	35,830	1,038,990
		2015-11-30	2015-12-15	499,460	49,940	141,530	27,810	718,740
		2015-11-30	2015-12-15	99,960	10,000	25,510	4,580	140,050
		2015-11-30	2015-12-15	67,470	6,740	16,980	3,070	84,260
		2015-11-30	2015-12-15	111,020	11,100	27,650	4,930	154,700
		2015-11-30	2015-12-15	13,790	1,380	3,440	610	19,220
		2015-11-30	2015-12-15	1,132,980	113,300	280,600	49,940	1,576,820
		2015-11-30	2015-12-15	115,630	11,560	28,470	5,050	160,710
		2015-11-30	2015-12-15	23,372,250	2,337,220	5,673,370	1,001,600	32,384,440
		2015-11-30	2015-12-15	275,200	27,520	66,930	11,790	381,440
		2015-11-30	2015-12-15	45,365,090	4,536,510	10,811,390	1,901,700	62,644,690
		2015-11-30	2015-12-15	25,862,790	2,586,280	6,163,610	1,084,150	35,698,830
		2015-11-30	2015-12-15	26,140,960	2,614,040	6,331,210	1,071,050	35,958,660
		2015-11-30	2015-12-15	30,074,440	3,007,440	7,026,580	1,228,230	41,336,700
		2015-11-30	2015-12-15	7,473,540	747,350	1,726,680	300,720	10,248,290
		2015-11-30	2015-12-15	186,590	18,660	42,900	7,360	255,510
		2015-11-30	2015-12-15	1,050,740	105,080	238,790	41,360	1,435,970
		2015-11-30	2015-12-15	26,590,520	2,659,060	5,994,820	1,035,690	36,280,090
		2015-11-30	2015-12-15	13,678,300	1,367,820	3,009,080	515,120	18,570,320
		2015-11-30	2015-12-15	17,896,110	1,789,610	3,923,000	671,280	24,280,000
		2015-11-30	2015-12-15	16,510,930	1,651,090	3,574,080	608,910	22,345,010
		2015-11-30	2015-12-15	37,869,110	3,786,910	8,197,900	1,396,610	51,260,530
		2015-11-30	2015-12-15	506,770	50,680	106,630	18,660	685,740
		2015-11-30	2015-12-15	18,203,980	1,820,390	3,930,340	662,040	24,585,660
		2015-11-30	2015-12-15	1406,570	140,650	360,590	77,050	1,985,370
		2015-11-30	2015-12-15	21,193,120	2,119,310	4,488,700	758,710	28,559,840
		2015-11-30	2015-12-15	23,986,950	2,398,690	5,034,940	843,610	32,264,190
		2015-11-30	2015-12-15	20,684,400	2,068,440	4,805,980	723,850	27,272,670
		2015-11-30	2015-12-15	1,150,590	115,060	239,490	40,210	1,545,340
		2015-11-30	2015-12-15	10,600	1,060	2,130	340	14,130
		2015-11-30	2015-12-15	827,590	82,760	178,840	29,130	1,118,320
		2015-11-30	2015-12-15	231,120	23,110	62,640	6,810	323,680
		2015-11-30	2015-12-15	15,187,570	1,518,760	3,444,730	565,560	19,536,620
		합계		386,149,410	38,614,900	86,326,590	14,871,590	525,962,490

1) 수입자가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원산지 신고 서류(송품장, 인도증서)에 기재되는 문구